

세법학 2부

【문제 1】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5점)

물음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물음 2) 다음 사례를 읽고 (1), (2)에 대하여 답하시오. (15점)

<사례>

거주자 甲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거주자 乙(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일: 2017년 8월 1일) 소유의 건물(용도: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 ① 계약일: 2022년 8월 20일, 잔금지급일: 2022년 9월 20일
- ② 매매대금: 7억2천만 원(건물가격 0원, 토지가격 7억2천만 원, 합계 7억2천만 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③ 특약사항: 양도자 乙이 잔금지급일 전에 건물 철거 후 토지만 甲에게 양도하기로 함

한편,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받은 바 없으며, 계약일 현재 기준시가는 각각 건물 4천만 원, 토지 2억 원이다.

(1) 위 <사례>와 관련하여 양도자 乙은 해당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건물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을 계약서상 금액인 0원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정한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의문이다.

양도자 乙이 「부가가치세법」상 건물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금액과 그 근거를 제시하여 서술하시오.

(2) 양수자 甲과 양도자 乙이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양도자 乙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계산이 복잡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세무사에게 문의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양도자 乙이 재화의 공급 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서술하시오.

【문제 2】 개별소비세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 제도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물음 2) 다음 사례를 읽고 (1), (2)에 대하여 답하시오. (15점)

<사례>

甲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차의 장기대여사업(이하 ‘렌터카업’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甲이 렌터카업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에 대한 조건부 면세승인이 적용되었다.

- (1) 甲은 렌터카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건부면세 승인을 통하여 2022년 1월 2일에 A승용차를 구입한 후 乙법인에게 대여하였는데, 2022년 8월 15일자로 乙법인에게 A승용차를 대여한 전체 기간의 합계가 6개월을 초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①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및 과세요건과 ② 그에 따른 신고 절차를 설명하시오.
- (2) 甲은 2022년 2월 28일에 조건부면세 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렌터카업에 사용한 승용차 20대를 2022년 중에 양도하고자 한다.
조건부면세를 받은 해당 승용차가 반입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된 경우에는 조건부면세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되어 개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甲은 이러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면서 양도할 수 있는 「개별소비세법」상 규정이 있는지를 세무사에게 묻고 있다.
‘조건부 면세승용차의 재반출(양도)시 면세절차’와 관련하여 ① 조건부면세의 요건과 ② 조건부면세를 받기 위한 신고절차를 서술하시오.

【문제 3】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물음 1)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 5개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근거하여 제시하시오. (10점)

물음 2) 다음 사례를 읽고 ①, ②에 대하여 답하시오. (10점)

<사례>

가방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불법건축물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공장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A사는 동 불법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A사가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불법건축물을 사실상 공장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동 불법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 ①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과 ② 그러한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를 「지방세법」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문제 4】 「조세특례제한법」 상 최저한세액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25점)

물음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 감면 등을 배제해야 하는 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10점)

물음 2) 다음 사례를 읽고 ①, ②에 대하여 답하십시오. (15점)

<사례>

내국영리법인(제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A의 관할 세무서장은 (주)A가 당초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와 관련한 사항의 적용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경정을 검토하고 있다.

(주)A가 당초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적용한 조세 감면 등은 다음 <보기>와 같다. (단, 최저한세와 관련된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보기>의 조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다고 가정함)

<보기>

(주)A가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적용한 조세 감면 등의 내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따른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관할세무서장의 검토 결과, (주)A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이 있으며, 그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 등을 배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주)A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 등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경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① 위 <보기> 중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조세 감면 등을 올바른 배제 순서에 따라 차례로 기술하고 ② 그렇게 배제 순서를 기술한 근거를 설명하십시오. (단, 위 <보기>의 조세 감면 등으로 인해 감소되는 세액의 합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것으로 가정함)